



서울 행정법원

1999. 9. 8. 판결선고	인
1999. 9. 8. 원본영수	

제 11 부

판 결

사 건 99구19601 자본금감소명령처분일부취소

원 고 별지목록 1.기재와 같다.

피 고 금융감독위원회

변 론 종 결 1999. 7. 28.

1.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1999. 6. 25.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2.기재 자본금감소명령처분 중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

률(이하 ‘금개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에 의거 동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출자한

정부 등이 소유한 주식 이외의 주식은 모두 무상소각할 것’이라는 부분은 이를 취소

한다.

1.이 유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갑1,2,3호증의 각 1,2, 갑4호증의 1 내지 17, 갑



5호증, 갑6호증의 1,2,3, 갑7,11,13호증, 을1 내지 4호증, 을5호증의 1 내지 6, 을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은 원래 주식이 일반 소액 주주에게 분산된 시중은행으로서 발행주식의 총수가 보통주식 164,000,000주(주당 액면가 금 5,000원), 자본금이 8,200억원이었는데, 1998. 1.경 부채가 자산을 약 9,853억 원만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에 피고는 1998. 1. 15. 제일은행에 대하여 자본금 8,200억원을 1,000억원으로 감자하라는 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제일은행은 1998. 1. 31. 기존주식을 8.2대 1의 비율로 병합하여 주식수를 2,000만주, 자본금을 1,000억원으로 감자하였다. 이어 소외 대한민국 및 예금보험공사(이하 소외 대한민국 및 예금보험공사를 금개법 제12조 제1항의 표현에 따라 '정부등'이라 한다)가 제일은행에 공적자금(이하 '제1차 공적자금'이라 한다)으로 각 7,500억원씩 합계 1조 5,000억원을 출자하여 제일은행의 발행주식수가 320,000,000주(주당 액면가 금 5,000원), 자본금이 1조 6,000억원으로 증가되었고, 이에 따라 기존에 제일은행의 주식을 취득하여 소유해 오던 별지목록 1.기재 원고들을 포함한 소액주주들의 지분이 100%에서 6.25%(2,000만주, 이하 '소액주주 보유 주식'이라 한다)로 감소되었고, 정부등 보유지분은 93.75%(3억주, 이하 '정부등 보유 주식'이라 한다)가 되었다.



나. 그 후 금융감독원이 1998. 12. 31. 기준으로 실시한 제일은행의 자산, 부채 평가결과 6,641억원 이상의 부채가 초과하고 있었고, 다시 1999. 3. 31.자 기준으로 실시한 결과 약 1조 8,769억원의 부채초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경영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제일은행의 정상화를 기대하기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다시 제일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소외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공적자금의 출자(이하 '제2차 공적자금'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한편, 1999. 6. 25. 제일은행에 대하여 별지목록 2.기재와 같이 금개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 동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출자한 정부 등이 소유한 주식 이외의 주식(금개법 제12조 제3항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출자한 정부등을 제외한 주주를 '특정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은 모두 무상소각하고, 무상소각되는 소액주주의 지분을 제외한 정부 소유 주식은 2차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발행하게 될 신주의 액면가액을 무상소각될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의 매수가격으로 나눈 비율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감소할 것을 명령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위와 같은 처분에 따라 제일은행 이사회는 1999. 6. 28. 제일은행의 총 발행 주식수의 82.99%에 해당하는 제일은행 주식 265,580,206주를 대상으로 감자를 실시 하되 정부등 보유 주식은 주당 액면금 5,000원인 주식 5.5127주를 같은 액면금의 주



식 1주로 병합하고, 소액주주 보유 주식은 전량 무상소각하여 감자하기로 하는 의결을 하였고, 또한 감자기준일을 1999. 7. 8.로 정하면서 소액주주 보유 주식에 대하여 금개법 제12조 제8항에 의거 감자명령을 받을 당시의 제일은행의 재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고려하여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907원으로 결정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첫째,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금개법 제12조 제3항은 1차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정부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정부등이 출자한 지분을 제외한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금개법상의 특정주주의 주식으로 보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소각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등의 보유지분과 차별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원칙에 반하고, (2) 주주들의 의사를 배제한 채 소액주주들의 보유지분을 임의로 무상소각하도록 한 것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에 위반되며, (3) 비록 공적자금을 회수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한 기본권침해는 최소한에 그쳐야 할 것이고, 그 기준 또한 명확하여야 할 것인데 위 조항은 특정주주의 개념과 유,무상소각명령처분의 요건을 비롯한 처분의 제반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판단권한을 사법기관이 아닌 피고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권제한원칙에 위반되는 과잉입법이고, (4) 따라서 위헌인 금개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둘



째, 금개법 제12조 제3항은 정부등이 출자를 하였거나 출자하기로 결정한 부실금융 기관에 대하여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각하거나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일정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할 2차 공적자금의 투입과 상관없이 그 이전의 1차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정부 등이 기존에 보유하여 오고 있던 지분은 위 조항의 특정주주를 규정하는 구분의 전제가 되는 '정부등이 출자한 지분'에 해당할 수 없고, 따라서 정부등의 보유지분과 특정주주의 보유지분을 나누어 정부지분은 병합하고 특정주주의 지분을 소각하도록 한 것은 금개법 제12조 제3항을 잘못 해석·적용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셋째, 제일은행 주식은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어 온 주식으로서 일정한 재산가치와 수익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식을 소유한 주주들의 주주권을 무상으로 박탈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처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필요성과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정부지분과 원고들 보유지분은 새로운 공적자금 투입시점에서 기존주주라는 동등한 입장에 있음에도 정부지분만 보호하고 민간인인 원고들 보유지분은 보호하지 않고 무상으로 박탈하는 것은 이러한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행하여진 처분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합병·전환 또는 정리등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여 금융기관간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고 금융업무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금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금융기관 또는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금융기관. 이 경우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10조 (적기시정조치)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기자본비율이 일정수준에 미달하는 등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권



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5. 주식의 소각 또는 병합

제12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계속된 예금인출 등으로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에 의하여 정부등이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는 상법 제330조·제344조제2항·제416조 내지 제4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내용, 수량, 발행가액, 배정방법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출자를 하였거나 출자하기로 결정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주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정부등을 제외한 주주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각하거나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일정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④부실금융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감소를 명령받은 때에는 상법 제



438조 내지 제4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에서 자본감소를 결의하거나 자본감소의 방법과 절차, 주식병합의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하고자 하는 부실금융기관은 채권자에 대하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 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여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 다만, 실제 자본감소금액(자기주식을 유상으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매입금액을 말한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등이 출자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부실금융기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결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그 결의사항과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의 경우 1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보유한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⑧부실금융기관은 제7항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회계전문가가 정부등의



출자가 이루어지기 전의 부실금융기관의 재산가치와 수익가치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나. 금개법 제12조 제3항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 평등의 원칙은 국가권력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금개법은 금융거래의 안전 및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하여 부실화된 사기업에게 정부등이 출자를 하여 이를 회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일반 사기업이 부실화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정리절차나 파산 등으로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의 자금을 모아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하는 등의 금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부실화하는 경우 일반 사기업에 비하여 국가 및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막대하여 투자자인 주주보다는 예금자 및 거래당사자의 보호가 더 강조되어야 하고, 정부등이 이러한 부실을 떠안고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1차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음에도 당해 금융기관이 또다시 부실화하여 자력으로는 갱생할 가능성이 없어 정부등의 제2



차 공적자금 투입이 요청되는 경우 제1차 공적자금을 투입한 정부등과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면 이미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제1차 공적자금마저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크므로 이미 제1차 공적자금을 투입한 정부등을 제외한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병합 또는 소각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고, 특히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어 주식의 순자산가치가 부(負)로 되는 경우 그러한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액면가로 출자하기 위하여는 기존 주식을 병합하여 주당 가치를 액면가에 맞추거나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특정주주 지분을 전부 소각함과 동시에 정부등의 보유지분도 전부 소각한 후 다시 정부등이 출자하는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특정주주 지분은 모두 소각하고 정부등의 보유지분은 병합하는 방법을 택하든지 특정주주의 보유주식을 모두 소각당하는 결과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1차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정부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특정주주의 주식을 다르게 취급하여 정부등이 출자한 지분을 제외한 주주들의 지분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한 금개법 제12조 제3항은 그 차별에 있어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 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금개법 제12조 제3항이 헌법상 재산권보장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 재산권보장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인바, 금융기관이 부실화하는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예금자 및 거래당사자의 지위가 불안정해지는 것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고 그 피해는 금융·경제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 국가 및 사회경제가 파탄이 날 위험성이 있으므로 부실화된 금융기관에 공적자금 투입이 요청되는 경우 그 금융기관을 희생시키기 위하여는 투자자인 주주의 재산권보장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고, 이러한 제한의 일환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였거나 투입할 정부등을 제외한 특정주주들의 보유주식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유상 또는 무상소각하거나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하게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내지 적합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 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특정주주의 보유주식을 무상소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금개법 제12조 제3항이 헌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보장을 해한다고 할 수 없어,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라. 금개법 제12조 제3항이 요건미비이고 과잉입법인지 여부

부실금융기관의 판정기준에 관하여는 금개법 제2조 제3호에서, 특정주주의 개념에 관하여는 금개법 제12조 제3항에서, 각 규정하고 있고, 금개법 자체에서 처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0-20

의 기준이 법정되어 있으며, 또한 피고는 행정청으로서 당연히 행정처분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 자이고 피고의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사법기관인 법원에 그 처분의 적법여부를 다툴 수가 있어 사법통제가 가능하므로 피고에게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부여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는 금개법 제12조 제3항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금개법 제12조 제3항이 요건미비이고 과잉입법이라는 취지의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다. 정부 등이 기존에 보유하여 오고 있던 지분이 금개법 제12조 제3항의 '정부등이 출자한 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금개법 제12조 제1항은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계속된 예금인출 등으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등에 대하여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금개법 제12조 제3항은 금개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위 법 제12조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자한 정부등을 제외한 주주를 특정주주라고 규정함으로써 유상 또는 무상소각의 대상이 되는 특정주주의 개념에서 금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정부등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위 두 규정을 종합하면 금개법 제12조 제3항은 정부등이 금개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이미 1차 공적자금을 출자한 지분은 특정주주의 지분과 달리 취급할 수 있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만약 정



부등이 1차 공적자금의 투입이 아닌 단순한 투자의 목적에서 기존에 주식을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당해 금융기관이 부실화하여 정부등이 새로이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우라면 이 경우의 정부등은 나머지 소액주주들과 더불어 특정주주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제일은행이 1998. 1.경 부채가 자산을 약 9,853억원 초과하고 있어 금개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금개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조 5,000억원을 출자하였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정부등이 1998. 1.경 제일은행에 1조 5천억원을 출자한 것은 금개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1차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이고, 따라서 정부등이 2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이 사건에서는 기존에 1차 공적자금을 투입한 정부등을 특정주주라고 볼 수는 없고, 정부등이 아닌 소액주주들만이 특정주주라고 할 것이어서 정부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액주주들의 주식만을 무상으로 소각하도록 한 것에 금개법 제12조 제3항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바. 이 사건 처분에 필요성과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처분경위와 금개법의 입법취지, 특히 소액주주 보유 주식을 전량 무상소각하되 소액주주 보유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가격을 1주당 907원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 주장과 같이 제일은행 주식이 일정



한 재산가치와 수익가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에 필요성과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사. 따라서 금개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은 합헌이고,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남
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위 규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
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9. 8.

재판장 판사 박해성 _____

판사 임영호 _____

판사 문유석 _____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0-20

별지목록 1. 원고들 목록

(별지목록 1. 원고들 목록 삭제)



별지목록 2. 자본금 감소명령

1.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거 기존주식의 전부를 병합하되, 동법 제13조의2 제1호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제8항에 의거 협의를 위하여 주주에게 제시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가격에 병합주식수(신주 1주로 병합되는 주식수를 말한다)를 곱한 가격이 병합후 신주의 액면가 이상이 되도록 병합비율을 정할 것. 다만, 동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동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출자한 정부 등이 소유한 주식 이외의 주식은 모두 무상소각할 것.
2. 이사회는 상기방법에 의한 자본금 감소를 1999. 6. 28.까지 의결할 것

-- 이 상 --



서울 행정 법 원

제 11 부

결 정

사 건 99아460 위헌심판제청

신 청 인 별지 신청인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 신 청 인 금융감독위원회

주 문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신 청 취 지 신청인들과 피신청인 사이의 당원 99구19601호 자본금감소명령일부

처분취소 사건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의 위헌심판제청을 구하다.

이 유 1. 위헌심판제청 신청이유

신청인들은,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개법'이

라 한다) 제12조 제3항은 피신청인은 금개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정부

등이 출자를 하였거나 출자하기로 결정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주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정부등을 제외한 주주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각하거나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일정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1차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정부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는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정부등이 출자한 지분을 제외한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금개법상의 특정주주의 주식으로 보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소각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등의 보유지분과 차별함으로써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규정으로서 국민의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위헌인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계법령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2조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등의 출자) ①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이 계속된 예금인출 등으로 영업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이하 "정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에 의하여 정부등이 부실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실금융기관의 이사회는 상법 제330조·제344조제2항·제416조 내지 제418조의 규정에 불



구하고 발행할 신주의 종류와 내용, 수량, 발행가액, 배정방법 기타 절차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정부등이 출자를 하였거나 출자하기로 결정한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특정주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정부등을 제외한 주주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소유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각하거나 특정주주가 소유한 주식을 일정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나. 헌법 제11조 위반 여부

나. 금개법 제12조 제3항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반되는지 여부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 평등의 원칙은 국가권력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합리적 근거에 의한 차별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금개법은 금융거래의 안전 및 예금자 보호 등을 위하여 부실화된 사기업에게 정부등이 출자를 하여 이를 회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서, 일반 사기업이 부실화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정리절차나 파산 등으로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나 불특정 다수인의 자금을 모아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하는 등의 금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부실화하는 경우 일반 사기업에 비하여 국가 및 사회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막대하여 투자자인 주주보다는 예금자 및 거래 당사자의 보호가 더 강조되어야 하고, 정부등이 이러한 부실을 떠안고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1차 공적자금을 투입하였음에도 당해 금융기관이 또다시 부실화하여 자력으로는 갹생할 가능성이 없어 정부등의 제2차 공적자금 투입이 요청되는 경우 제1차 공적자금을 투입한 정부등과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동등하게 취급한다면 이미 국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제1차 공적자금마저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크므로 이미 제1차 공적자금을 투입한 정부등을 제외한 소액주주들의 주식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병합 또는 소각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고, 특히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어 주식의 순자산가치가 부(負)로 되는 경우 그러한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액면가로 출자하기 위하여는 기존 주식을 병합하여 주당 가치를 액면가에 맞추거나 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특정주주 지분을 전부 소각함과 동시에 정부등의 보유지분도 전부 소각한 후 다시 정부등이 출자하는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특정주주 지분은 모두 소각하고 정부등의 보유지분은 병합하는 방법을 택하든지 특정주주의 보유주식을 모두 소각당하는 결과에 있어서



는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이미 1차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정부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특정주주의 주식을 다르게 취급하여 정부등이 출자한 지분을 제외한 주주들의 지분을 소각할 수 있도록 한 금개법 제12조 제3항은 그 차별에 있어 합리성을 갖춘 것으로 객관적으로 정의와 형평에 반한 다거나 자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이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신청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 따라서 금개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은 합헌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규정이 위헌이라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금개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 조항임을 전제로 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9. 8.

재 판 장 판 사 박 해 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15-10-20

판 사 임 영 호

판 사 문 유 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5-10-20

별지 신청인들 목록

(별지 신청인들 목록 삭제)